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752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아라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6. 24.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6. 19. 선고 2019가단10592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4 ~ 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C의 무자력

C는 2018. 9. 19. 매매계약 당시 시가 약 8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매쳐진 D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8,000,000원,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6,000,000원, F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채무 8,379,819원 및 각종 카드대출금채무 70,658,000원 등 합계 143,037,819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였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5 ~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8, 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김선영, 판사 김유성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벽돌조

면 적 : 3층 호 43.33㎡

지층 7.13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군포시 대 149.7㎡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49.7분의 24.95